

서울서부지방법원 2022. 1. 21 선고 2021가단5228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고A

피고B

변론 종결 2021. 12. 17.

판결 선고 2022. 1. 21.

주 문

1.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1) 주위적으로,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. 11. 27.자 금전공탁증서 기재와 같이 피고 B으로 되어 있는 2020년 금 제5333호에 관하여, 피고 B은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자 소외 부친 C으로부터 받은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직접 지급하라.

예비적으로,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. 11. 27.자 금전공탁증서 기재 피고 B 명의로 있는 2020년 금 제5333호에 관하여, 피고 B은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외 C을 대신하여 채무를 이행하고, 피고 B은 서울서부지방법원 공탁과 접수 2020. 11. 27.자 금 제5333호로써 마친 B 명의로 된 보관공탁금을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라.

이 유

민사소송에서 청구의 취지는 그 내용 및 범위를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고 청구취지의 특정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,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보정을 명하고 그 보정명령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(대법원 2014. 3. 13. 선고 2011다111459 판결 등 참조).

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, 소장에 기재된 청구취지가 불특정하여 참여관이 원고에게 청구취지를 정정하라는 보정명령을 내렸고, 이에 원고는 위 2021. 6. 14.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다. 그러나 여전히 청구취지가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워, 재판장이 변론기일에서 원고에게 청구취지를 명확히 정리하라고 보정을 명하고, 이를 위하여 변호사 보수에 대한 소송구조결정까지 하였으나,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청구취지를 정리하지 못하였다.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 청구취지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.

판사허명욱

별지

1) 원고의 2021. 6. 14.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상의 '청구취지의 변경' 부분의 청구취지를 그대로 기재한다.